

의안번호	2218656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계번호	26B239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3 신설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7조의3 신설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별 사업 개시시점의 지가, 종료시점의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부담금 부과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향후 특례대상 기간 동안 인가 받은 개별 사업들의 구체적인 착공·준공 시기 및 사업 추진 전후의 지가상승분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개발이익	20% ~ 25%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25% 또는 20%)	법 제8조, 제13조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표 2] 개발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5년도 배분액(백만원)	관련 조항
합계		100%	462,692	
국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50%	231,34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50%	231,346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nabo.go.kr